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11.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1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세열

가. 제안이유

종이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대체되고, 수수료 납부 방법이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(2)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 및 추가함(안 제3조).
- (3)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내용을 조례에 편입함(안 제5조~제7조).
- (4) 증명발급기 출력 서식에 맞게 별지를 수정함(별지 제2호서식).
- (5)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, 판매 및 교환 관련 규정을 삭제함(제8조~제12조).
- (6)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상수)

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사용하였던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의 수입증지가 도입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수입증지를 정의하며 그에 따른 납부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3조에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안 제5조와 안 제6조, 안 제7조는 수입증지의 규격, 계기 관리,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으로,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에 편입하였으며, 증명발급기 출력 서식에 맞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하고,

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, 판매 및 교환 관련 규정인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를 삭제함.

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